

[별지 제7호] <개정 2016. 12. 6.>

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보고

문서번호 2022-035 2022. 8. 10.
수 신 금융감독원장
참 조 자산운용감독국 자산운용총괄팀
제 목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보고

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제2항,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」 제14조제1항에 따라 2022. 8. 8. 개최된 이사회에서 붙임과 같이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 및 해임하였음을 보고합니다.

- 붙 임 : 1.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및 해임 내용 1부.
2.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심사표 1부. 끝.

주식회사 아이온자산운용 대표이사 김우형 (인)



작성 자 : 박화신 (이사)

전화번호: 02-6927-0152

(붙임 1)

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및 해임 내용

1.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선임

성명 (한자)	직위	임원 여부	주민등록 번호 (앞의 6자리)	선임일	임기 (만료일)	업무범위	겸직 직위 및 업무	주요 경력 ¹⁾	자격 요건 확인 결과
박화신 (朴華信)	이사	여	821004	2022. 08.08	2025. 08.07	준법감시 및 위험관리 업무	-	'금융회사의 지 배구조에 관한 법률' 제26조 제1항 제2호 다 목 '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 상 종사한 사 람	자격 有

주 1) 주요 경력란에는 법 제26조제1항제2호 및 영 제21조제2항에서 정하는 학력 또는 기관에
서의 근무경력과 최근 5년간의 근무경력을 연월 단위로 기재

[주요경력 상세]

- * 주식회사 케이엑스이노베이션 (사내변호사) 2021.11.01. ~ 2022.06.30
- * 서울중앙지방법원 (조정전담변호사) 2018.10.15 ~ 2021.10.31
- * 법무법인 청목 (소속변호사) 2012.08.20. ~ 2018.03.30

2.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해임

성명 (한자)	주민등록번호 (앞의 6자리)	선임일	해임일	해임사유 ¹⁾	비고 ²⁾
양화진 (梁火濂)	800113	2021.04.22	2022.08.08	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사임으로 인한 변경	해임완료

주 1) 해임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이사회 결의서, 사직서 사본 등) 첨부

2) 향후 준법감시인(또는 위험관리책임자) 선임일정 및 절차 등

(붙임 2)

준법감시인 선임 심사표

성명 (한자)	박화신 (朴華信)	직위	이사
심사항목		심사결과	
1.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최근 5년간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, 그 밖에 다음 기관으로부터 문책경고 또는 감봉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인 없을 것 1) 해당 임직원이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기관 2)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이 아닌 자로서 금융관계법령에서 조치 권한을 가진 자		해당사항 없음	
2. 법 제2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*. 다만, 각 목(법 제26조제1항제2호라목 후단의 경우는 제외)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6조제1항제2호라목 전단에서 규정한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.		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26조 제1항 제2호 다목 '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에 해당 * 주식회사 케이엑스이노베이션(사내변호사) 2021.11.01. ~ 2022.06.30 * 서울중앙지방법원 (조정전담변호사) 2018.10.15 ~ 2021.10.31 * 법무법인 청목 (소속변호사) 2012.08.20. ~ 2018.03.30	
3. 법 제29조 및 영 제24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지 않을 것		해당사항 없음	
종합의견 위 심사항목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으므로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함			
2022년 8월 8일			
주식회사 아이온자산운용 준법감시인 박화신 주식회사 아이온자산운용 대표이사 김우형 (인)			

* 제26조제1항제2호 각 목 중 해당하는 목을 기재하고, 관련 경력을 상세하게 기재

【첨부서류】

1. 이사회 결의서
2. 금융회사 임원 약력표 등을 포함한 이력서(사진부착 및 본인 확인)
3.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속기관,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, 그밖의 감독·검사기관으로부터 문책경고(감봉요구) 이상의 제재를 받은 사실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인사기록카드, 감독기관·소속기관의 확인서 등)
4. 법 제26조제1항제2호 및 영 제21조제2항에서 정하는 이전 및 현재 근무처의 근무확인서(경력증명서 등)
5. 외국인의 경우 금융법규상 준법감시인의 결격사유에 준하는 이전 및 현재 근무지의 관련 법규상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소속기관 또는 이전 근무처의 확인서 등)
6. 기타 심사항목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본인 및 소속기관의 확인서 등)

위험관리책임자 선임 심사표

성명 (한자)	박화신 (朴華信)	직위	이사
심사항목		심사결과	비고
1. 법 제28조제3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최근 5년간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, 그 밖에 다음 기관으로부터 문책경고 또는 감봉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인 없을 것 1) 해당 임직원이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기관 2)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이 아닌 자로서 금융관계법령에서 조치 권한을 가진 자		해당사항 없음	
2. 법 제28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*. 다만, 법 제28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8조제3항제2호다목에서 규정한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.		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26조 제1항 제2호 다목 '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에 해당 * 주식회사 케이엑스이노베이션(사내변호사) 2021.11.01. ~ 2022.06.30 * 서울중앙지방법원 (조정전담변호사) 2018.10.15 ~ 2021.10.31 * 법무법인 청목 (소속변호사) 2012.08.20. ~ 2018.03.30	
3. 법 제29조 및 영 제24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지 않을 것		해당사항 없음	
종합 의견 위 심사항목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으므로 위험관리책임자로 선임 함			
2022년 8월 8일 주식회사 아이온자산운용 위험관리책임자 박화신 (인) 주식회사 아이온자산운용 대표이사 김우형 (인)			

* 제28조제3항제2호 각 목 중 해당하는 목을 기재하고, 관련 경력을 상세하게 기재

【첨부서류】

1. 이사회 결의서
2. 금융회사 임원 약력표 등을 포함한 이력서(사진부착 및 본인 확인)
3. 제2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소속기관,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, 그밖의 감독·검사기관으로부터 문책경고(감봉요구) 이상의 제재를 받은 사실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인사기록카드, 감독기관·소속기관의 확인서 등)
4. 법 제28조제3항제2호 및 영 제23조제3항에서 정하는 이전 및 현재 근무처의 근무확인서(경력증명서 등)
5. 외국인의 경우 금융법규상 위험관리책임자의 결격사유에 준하는 이전 및 현재 근무지의 관련 법규상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소속기관 또는 이전 근무처의 확인서 등)
6. 기타 심사항목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본인 및 소속기관의 확인서 등)